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	2026두30599 농지대장 직권취소
원고, 상고인	원고
피고, 피상고인	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동장
원 심 판 결	대전고등법원 2026. 2. 10. 선고 2025누507 판결
판 결 선 고	2026. 11. 12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1. 농지대장 삭제행위의 처분성에 관하여

가.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·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,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,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, 그 행위의 주체·내용·형식·절차,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, 그리고 법치행

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1714 판결, 대법원 2010. 11. 18.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나.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 행정의 기초자료이고,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,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서 농지 또는 농업인에 관한 각종 지원이나 혜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대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농지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근거서류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, 특정 토지가 농지대장에서 삭제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 또는 혜택을 신청할 때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, 특정 토지에 대한 농지대장을 삭제하는 행위는 농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. 특정 토지가 농지대장에서 삭제된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, 해당 토지에 관계된 각종 지원 또는 혜택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.

따라서 농지대장에서 특정 토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그런데도 이와 달리 농지대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2. 결론

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영재

주 심 대법관 오경미

대법관 권영준

대법관 김성수